

전기통신관련 법령 개정(안)에 관한 건의

일자 : 1994년 8월 4일자

대상 : 체신부

1. 건의 배경

우리 전자공업진흥회는 '76년 당시의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통신산업을 비롯한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업계의 애로와 산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조사 연구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도, 전자 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정부의 의지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업계에 전달하는 등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전력을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 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자의 참여 제한을 외국의 업체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며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전화사업에 대하여는 유독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을 1/1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 기존의 협회와 업무 영역이 중복될 것이 확실한 협회를 신설코자 하는 것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기한다는 법개정의 취지와는 오히려 반대된다.

업종전문화라는 명분에도 상반되는 조항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전화사업 등에 대한 완전한 자율 경

쟁 체제와 조속한 민영화 추진에 관하여도 우리 업계의 절실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이다.

동개정(안)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맞은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의내용

1) 전기통신사업의 조속한 민영화체제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최근 정부에서도 기본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시외전화의 경쟁 도입, 국제전화 경쟁확대, 시내전화 경쟁검토 등 다각적으로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확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97년도가 되면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되는 데, 그때에 가서야 우리 업계가 동일선상에서 외국의 거대 통신업체와 경쟁을 시작한다면, 현재의 공기업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

첨단산업의 선두적인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경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사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체제와 완전한 자율경쟁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에 있어,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참여 제한은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명분과는 역행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동일인 포함)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첫째, 전화사업에 대한 지분한도 특별제한 조항이 폐지(개정안 제6조 제1항 제5호) 되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을 1/3로 제한하면서 전화사업자는 특별히 1/10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폐지 되어야 한다.

통신사업 구조개편의 방향과 괴리가 많다. 일반(유선), 특정(무선) 사업구분을 폐지하면서 한편 전화(유선), 비전화사업(무선)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기존의 음성만을 매개하는 전화사업 본질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CATV사업과 전화사업의 사업영역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94. 6. 28 하원통과/상원상정)

따라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수용하여야 한다. 유/무선 구분의 폐지로 기술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PCS, CT-2, CT-3 등과 같은 새로운 Service에 있어서의 유·무선 구분은 무의미하다.

또한 주인있는 책임경영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현행 대주주의 10%의 지분한도를 가지고는 독립적 경영을 확보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당초 정책목표인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지는 것이

다. (30대 기업집단의 평균내부 지분율 : 42.7%('94. 4. 1 현재))

현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한계를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

현 사업자의 투자능력의 한계, 정치적·법적 제약으로 인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민간의 참여 확대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조기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97년 UR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는 외국 선진사업자들과는 동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94~'96년 개방전 2~3년간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기간임)

경쟁력 집중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해결이 가능한데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는 동사업법에 의한 제한이 아닌 운영 기술에 의한 방법으로 별도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또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주주 지분참여에 있어 전화사업에 대한 특별제한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설비 제조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폐지(개정안 제6조 제1항 제7호) 되어야 한다.

우리 통신설비 제조업체가 외국정부나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법인(동조 제1항 3호에 의해 3분의 1까지 지분참여 가능) 보다도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신 설비제조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정서 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업종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통신과 전혀 무관한 일반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참여의 제한 없이 영위함과, 통신설비 제조업체가 관련분야에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관련통신사업에 참여함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국제경쟁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사료되어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유치단계에 있는 우리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주식 참여지분이 기술, 자본력이 뛰어난 외국인(통신업체) 보다도 극히 불리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로부터 통신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간통신사업에서 국내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 통신시장 보호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통신산업 구조 변화의 추이 및 올바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설비제조(H/W+S/W)+운영 서비스의 기술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망관리 기능, 신호분배 등 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H/W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와 설비간의 구분 모호)

둘째, 설비제조 기술과 운영 서비스기술의 통합을 통한 상승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설비제조업체가 서비스 기술의 노하우를 가질 경우 기업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이를 하드웨어 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술개발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투자의 효율성 : 연구개발의 이중 투자방지 등,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셋째, 세계적인 선진 외국업체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비스와 설비공급의 경영 확대 추세에 놓여 있다.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지분제한은 일부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국가들도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전화 회사에 대한 H/W제조 허용 법규 제정 움직임('91년부터)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NTT의 H/W개발이라든가 AT&

T(서비스 매출비중 61%, 설비판매 25%, 기타 14%), Italtel, Nynex, GTE, 팩텔, BT 등은 그 좋은 사례들이다.

네째,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통신시장 추가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이고 가장 빠른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교환기, 유·무선전송기기, 전선제조업체를 “통신설비업자”로 규정하여 지분참여를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통신설비”의 개념이 정보통신 산업관련 전 H/W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설비 제조업체의 범위는 전자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설비제조업자에 대한 제한은 곧 정보통신과 무관한 회사들만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①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경쟁력 저하

☞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여론에 의한 논리만을 우선한 결과임.

② 첨단산업의 선두적인 정보통신사업에서 경험이 없는 사업자의 경영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외국 거대기업과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

☞ '97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

위와 같은 추이 및 방향 외에도, 동법의 개정취지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통신설비 제조업체에게는 개별기업이나 기업집단의 경우에까지 10%이하(전화역무는 100분의 3)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모로 보나 당위성과 현실성이 결여 되었다는 한결 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통신 설비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조건이 동일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이동통신산업의 경우 앞으로 세계시장이 매우 유망한 분야이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물론 단말기의 부품 국산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국내통신 제조업체를 외면할 경우 우리 통신산업은 현상태에서 고사될 우려마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신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 서구의 각국들은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오히려 미국 AT&T사의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겸하고 있으며 영국 Racal Telecom PLC사의 경우에는 자회사(Vodafone 등)를 경영하는 등 선진국들의 추세는 통신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업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제3국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업종 전문화 유도정책 측면에서도 비통신업체의 새로운 신규 참여보다는 기존 통신업계의 전문화가 바람직스러운 일로 이번의 법률 개정안 중 당해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통신산업협회 설립 반대

개정안 제13조의 2(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의한 신규 협회의 설립안은 삭제되어야 한다.

협회 설립의 목적인 “정보통신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는 소관

부서인 상공자원부에 일임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의 목적으로 본다.

그것이 우리 정보통신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협회로도 충분히 상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또 다시 협회를 설립함은 기업에 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협회의 난립으로 유사 협회와의 업무중복이 초래되어 업계로서는 업무상의 혼란과 시간·인력 등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당해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당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설립을 결정해야 할 협회를 정부가 법정기구화 하여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출연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출연케 함은 물론 사업계획의 변경, 임원의 선임 등에 까지 관여하는 것 자체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신정부의 구호와도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과 기업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곧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이익금이 불필요하게 쓰여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기존의 협회와 유사한 목적과 성격의 협회를 업계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특별법으로 법정기구화하여 설립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산 CATV 방송장비(방송용 카메라, VCR) 사용 촉진을 위한 건의

일자 : 1994년 7월 29일자

대상 : 관련부처

1. 건의 배경

정부는 그동안 국산 CATV 방송장비(방송용 카메라·VCR)에 대한 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자(SO, PP)에 대한 인식 제고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생중계용 방송시스템과 연합 TV 뉴스에 대한 예외 수입 허가 움직임이 있어 국산 방송장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본회의 CATV기기산업협의회 회원사 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산장비를 사용해 주실 것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2. 건의 내용

1) 국회 생중계 System

국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국회에서 사용할 방송장비를 선정함에 있어 국산 방송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가 전자공업발전의 방향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이에 역행되는 행위라 판단된다.

현재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과의 경쟁을 고려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산 장비를 사용치 않을 경우 공중파 방송국은 물론 CATV 방송국(P/P, S/O)에서도 국산장비 사용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CATV 인가시 인가 조건인 국산사용 70% 규정이 유명무실화 되고 수입선 다변화 품목인 카메라, VCR, 모니터 뿐만 아니라 타기 특히 컨버터 등 1조 5,000억 시장이 외산장비 일색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와해 될 것이 명백해 진다.

또한 기중 선정 대기중인 P/P, S/O에서 이를 기회로 기중 선정을 더욱 연기시켜 '95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된 CATV 방송은 방송의 시작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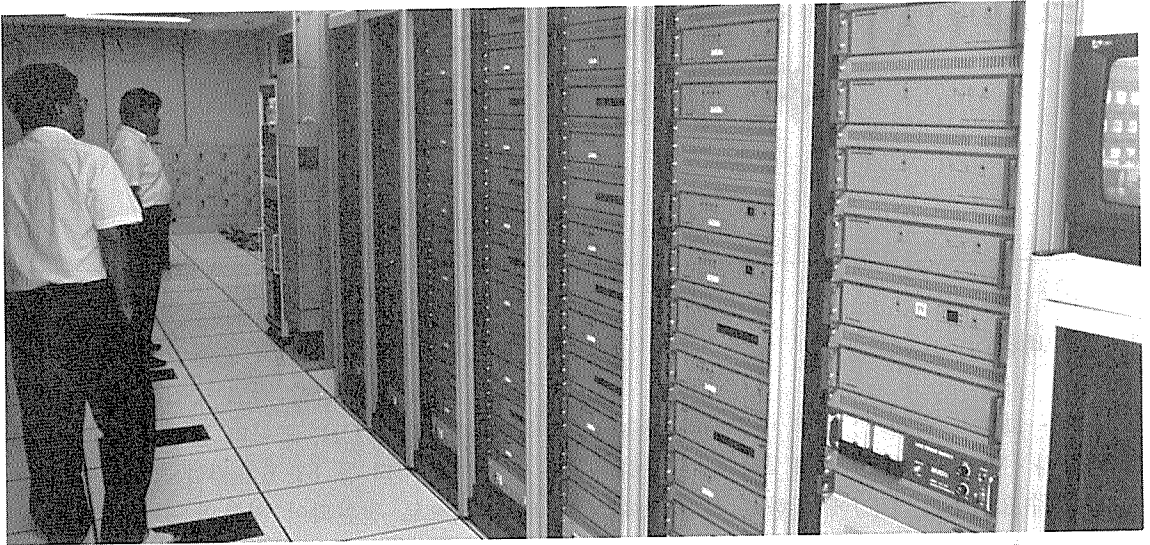
2) 연합 TV 뉴스 방송 System

연합 TV 뉴스는 CATV 프로그램 공급업자로 선정, 인가시 국산장비 70% 사용을 정부와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에 외산장비의 수입을 의뢰, 상공부는 연합 TV에 대해 보도 특수성을 들어 수입 요청 전랑을 특별 허가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상공부에서는 연합 TV만 수입 허용(전랑)하고 기타 공중파 방송국과 P/P, S/O에 대해서는 국산 대체 가능시 절대 수입 허용을 불허할 방침이라 하고 있다.

동일 보도부문으로 인가 받은 매일경제 TV(매일경제신문)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불가하여 국산 대우전자 제품으로 계약하였으나 연합 TV에 수입이 허용될 경우 매일경제 TV도 경쟁관계로 기종을 고급화하여 Sony로부터 직수입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타 한국스포츠TV, 교통관광TV, 대우 씨네마 네트워크, 채널Q, 센츨리TV, 현대방송,



제일방송, 두산 슈퍼 네트워크, 마이TV, 다솜방송, 고려음악방송, 뮤직네트워크, 어린이방송, 동아텔레비전, 그린TV, 평화방송TV, 불교TV, 등 방송장비 결정 유보중인 모든 업체가 수입 허용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3) 업계 대응 방안

국회 및 연합TV 뉴스에서는 국산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단,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되 특히, 국회의 방송용 Camera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실연 등의 평가에서 국산제품이 우수하다는 방송기술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으나 국회 실무진은 외산장비의 설치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정부의 국산장려 정책과도 모순되며 셋째, 방송장비 개발과 국산화에 혼신의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사기저하 및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CATV, 민방에 국산장비를 적극 권장하는 국가정책과 모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기타 방송국, P/P, S/O 등에서도 사용토록 해야 한다.

CATV 기기 산업협의회 회원사에서는 사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 개발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다.

〈예〉

동양 텔레콤 : CATV 수신설비 등 국산화 완료

동서전자 : CATV Audio 설비 등 국산화 완료

삼성 : 송하와 Full Line-Up 기 확보(제휴 완료)

대우 : Sony 방송용 Level Camera, VCR 기술 도입(업무용은 제휴 완료)

현대 : BTS ; Camera, Ampex ; DCT 기술도입 및 개발

기타 : 컨버터 등 다수제품 국산화 완료

국가 정책기관 및 사용자와 생산업체의 협의 창구인 CATV 기기 산업협의회 활성화로 사용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제품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탁기 특별소비세 추가 인상(안)에 대한 건의

일자 : 1994년 8월 24일자

대상 : 상공자원부

1. 건의 배경

세탁기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해결해 줄 보급률 90%의 대중적 생활용품으로 대만을 비롯한 어느 국가에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구분	C-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한국	15~20%	15~20%	10%	15%
대만	13%	13%	0	0

동개혁(안)중 전기세탁기보다 고가인 그랜드형 피아노는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있어 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최근의 각종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소비 생활용품 등의 가격 불안정으로 국민의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탁기의 특소세를 추가인상은 제품의 가격을 1년만에 5.75%(약 4만원) 추가 인상시켜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의 추가 인상은 세탁기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94년 1월 1일부터 특소세가 적용된 후 상반기까지 2,507억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말까지는 5.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추가 인상된 15%가 적용되면 시장침체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특소세 추가 인상시 1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특소세를 5% 추가 인상하였을때 세수가 285억원이 더 확보되지만 매출액 면에서는 전년보다도 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인세, 부가세에서의 세수가 각각 248억원, 55억원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단위 : 억원)

구분	'93	'94	'95			
			10%	15%	세수차액	
세	매출액	6,691	6,346	6,855	6,030	-
	특소세	-	825	891	1,176	285
	법인세	2,141	2,030	2,057	1,809	-248
수	부가세	669	717	775	720	-55
	계	2,810	3,572	3,723	3,705	-18

* 특소세는 교육세만 포함

법인세 : '93년, '94년 : 32%, '95년 : 30%

부가세 : (매출액+특소세)×10%

2. 건의내용

재무부 '94세제개혁(안)중 전기세탁기의 특소세를 15%를 현행 10%로 유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93	'94	증가율	'93	'94	증가율	'93	'94	증가율
수량	775	610	-21.3	804	740	-8.0	1,587	1,350	-14.9
금액	2,708	2,507	-7.4	3,983	3,839	-3.6	6,691	6,346	-5.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

일자 : 1994년 8월 2일자

대상 : 상공자원부

1. 건의 배경

우리 가전업계는, 표제의 법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형 가전제품 포장재를 전면 사용금지하고 대체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운송, 하역에 따른 제품 파손 및 불량률 급증,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포장재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 및 재활용평가도 거치지 않았으며 기존 포장재에 대한 회수 재활용 노력도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인 것의 의한 내용이다.

2. 건의 내용

1) 제9조 1항 관련 : 용적이 3만^{cm}³ 제품의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용완충재의 사용규제 대체완충재인 Pulp-Mould(종이완충재)의 경우, 합성수지 완충재에 비해 습기, 복원력, 작업성, 가격 등에 있어 효율성이 낮고, 유통중 제품 파손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및 합성수지 완충재에 대한 객관적인 재활용 및 환경영향 평가가 없는 실정에서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을 전면 금지코자 하는것은 무리이다.

실제 우리 가전업계는 원가절감차원에서, 포장완충재의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EPS는 회수만되면 전량 PS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사용량 규제보다는 한국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및 한국자원재생공사들

과 연계한 회수 및 재활용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ulp-Mould에 대한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전업계가 의무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경우 수급, 품질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규정』(환경처고시 1994-45호('94. 7. 4))에서는 사업자에게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규칙에서는 그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것도 모순이다.

2) 제2조 2항 관련 : 용적이 3만^{cm}³ 이상 제품의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기준 마련

현재 우리 업계는 각 업체별로 또 제품별로 포장용완충재 사용량이 감량화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감량화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은 기업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대체재료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량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할 경우 수급, 품질 등 불안정의 우려가 높다.

3) 부칙 ③항 관련(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 사용규제)

제품개발이 완료된 '95년도 신제품의 경우 신모델 개발에 따른 개발일정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시행시기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 규제는 시기상조이고, 선진국처럼 감량화의 적극유도, 재활용의 확대, 회수 의무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대체포장재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재질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액(예상/연간)

구 분	Pulp-Mould	지기구조	추가비용
포장재료비	현 EPS 대비 1.7배	1.5배	120억원
작업성	-	4.0배	34억원
파손불량			135억원
기타			50억원
계			339억원

4. 외국의 사례

전세계적으로 가전제품의 합성수지 완충재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으며, 선진국의 경우도 회수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포장쓰레기 방지법에 의해 DSD에서 포장재의 부피에 따라 일정 금액의 회수비용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에너지, 리사이클지원법에 의해 재생, 재활용을 위한 회수처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타 선진국에서도 업체 자율적으로 감량화를 유도 권장하고 있다.

3.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전제품중 소형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구 분	소형제품 비율	비 고
V T R	100%	가전사 총매출액의 30%가 소형 가전제품임
캠 코 더	100%	
L D P	100%	
카 오 디 오	100%	
카 세 트	100%	
소형생활용품	100%	
노트북 PC	100%	
전 화 기	100%	
스 테 레 오	95%	
주 방 기 기	95%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규 칙 (안)	조 정 (안)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 등) ①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용적이 3만㎤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 등) ① 용적이 3만㎤미만인 가전제품의 포장재로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외의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적이 3만㎤이상인 가전제품의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 등) ① 용적이 3만㎤미만인 가전제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재질의 완충재는 감량화하여야 하고 점차 재생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대체 사용하여야 하며 3만㎤이상인 가전제품의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전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완충재를 감량화하여야 한다.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년차별 감량화 기준	제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단, 기준제정 이후 사용되는 완충재가 재생, 재활용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동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③ (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기한)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③ (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사용규제)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이 3만㎤미만인 가전제품의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사용규제는 1995.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③ (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사용규제) 1996. 1. 1일부터 적용한다.